

##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

제정 2007. 3. 7 규정 제 14호  
개정 2009. 6. 17 규정 제 42호  
개정 2010. 4. 20 규정 제 64호  
일부개정 2013. 1. 31 규정 제 91호  
일부개정 2016. 12. 27 규정 제145호  
일부개정 2019. 4. 16 규정 제179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중 호선한다. <개정 2010. 4. 20>

**제3조(의결사항)**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7>

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4. 조직 ·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  5. 주요규정의 제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6. 중요한 재산의 취득 ·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  7.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 · 수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
  8.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
  9.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 12. 27>
  10.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  11.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
- ②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

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**제4조(회의소집)**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0. 4. 20, 2016. 12. 27>

② 의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 4. 20, 2016. 12. 27>

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7>

④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3조의 제1항 제1호 ~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이사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7>

③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에 그 전 말을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의안은 제안설명, 찬반토의,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.

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 표결로 할 수 있다.

⑥ 의안은 원안가결, 수정의결, 부결,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, 부의된

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, 심의보류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.

⑦ 제1항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본다.

**제6조(재심요청)**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임·직원의 출석)**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·직원을 출석요구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권한의 위임)**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부의절차)**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【별지 제1호 서식】에 의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기획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6>

② 기획감사팀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이사회 의사관리대장 【별지 제2호 서식】에 등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,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그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[전문개정 2010. 4. 20]

**제10조(의안설명)** 이사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장이 하며,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의사록 작성)** 이사회 의사록 【별지 제3호 서식】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·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의결사항 통보)**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7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

기타 관계부서에 【별지 제4호 서식】에 의거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이사회 사무관리)**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팀장, 서기는 이사회 담당직원이 된다. <개정 2009. 6. 17, 2010. 4. 20, 2013. 1. 31, 2019. 4. 16>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

2.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서기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를 한다.

**제14조(의사록 등의 보존)** 이사회 의사록, 서면결의서 【별지 제5호 서식】 및 부의 원안은 기획감사팀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4. 20, 2019. 4. 16>

#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규정 제42호, 2009. 6. 17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64호, 2010. 4. 20>

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91호, 2013. 1. 3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145호, 2016. 12. 27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178호, 2019. 4. 16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이 사회 부 의 안 건

제 회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			
일 시		의안번호	제 호
의 제			
안 건			
구 분	의결사항 ( )	보고사항 ( )	

 제 안 자 칙위(급) 성명 주 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

1. 제안근거

2. 예산조치

3. 합의

4. 절차

5. 기타

[별지 제2호 서식]

이사회 의사관리대장

회의 차수	일자	의안번호	건명	제안부서	의결(보고)내용

[별지 제3호 서식]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제        회     이     사     회     의     사     록

양주시시설관리공단

[별지 제3-1호 서식] <개정 2019. 4. 16>

## 제 5 회 이 사 회 심 의 안 건

□ 일 시 : 년 월 일 ( 요일)  
자 : 시 분  
지 : 시 분

□ 장 소 :

□ 회의출석

- 총 이사수 : 인
  - 출석이사수 : 인
  - 감 사 : 인
  - 배 석 : 인
  - 의 장 :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

의장의 년도 제 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의거 간사(관계직원)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(별첨)와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.

년 월 일

##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

[별지 제3-2호 서식]

의 안 목 록 표
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 명 :			
의결내용 :			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 명 :			
의결내용 :			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 명 :			
의결내용 :			

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19. 4. 16>

## 이사회 심의결과 통보서(제12조관련)

## 수 신 :

### 참조 :

제 회 이사회( 년 월 일)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명			
심의결과			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			
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			

[별지 제5호 서식] <개정 2019. 4. 16>

제      회    이사회    서면결의서(제14조관련)

제    목  :

표제의 별첨 사항을 이사회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하니 찬성 여부를 아래에 서명 바랍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 (인)

직    위	성    명	서    명	찬    성	반    대	비    고
의    장					
이    사					
이    사					
이    사					
이    사					

